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2015.05.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상 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년 6월 2일(화)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5년 6월 5일(금)

## 4.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조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 5. 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6. 주요 내용

- 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다.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및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7.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가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은 교통안전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및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6조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자체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과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8조에서는 초등학교 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 등을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동안 중앙정부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보호구역 주변의 통학로는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차도 혼용, 불법 주·정차 등으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4년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변 통학로에 대하여 전방위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5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3월2일부터 교통시설물 정비,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을 본격 시행중에 있음.

또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9년 15,642건에서 2012년 12,49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9년 기준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스웨덴·영국 0.6명, 일본 0.7명, 독일 0.8명, 프랑스 1.1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명으로 아직까지 높은 편임.

따라서, 동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진구 등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우리 구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기타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15.6.4 현재)

구분	광역	기초	비고
계	11	25	
서울	○	7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양천, 동작
부산	○	1	북구
인천	○	0	
광주	○	3	동구, 서구, 북구
대전	○	0	
울산	○	0	
세종	○	0	
경기	○	4	수원, 구리, 하남, 고양
충남	×	1	보령
전북	○	2	전주, 익산
전남	×	4	목포, 순천, 나주, 광양
경북	○	1	안동
경남	×	2	김해, 거제
제주	○	0	

### ■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13세 미만)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건수	14,930	14,980	14,095	13,323	12,497
사망자수	138	136	126	80	83

※ 경찰청 2013년판 교통사고 통계 자료 참조

### ■ OECD 주요회원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14세 이하)

(단위 : 명)

국가	스웨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인원	0.6	0.6	0.7	0.8	1.1	1.9

※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09년), 도로교통공단 자료 참조